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의2서식] <개정 2025. 10. 1.>

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(https://www.sexoffender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고지정보 [] 공개정보 [] 정정 요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처리 절차란에 별도 기재

요청인	성명:	
	생년월일	
	주소: (연락처:) ※ 답변완료 문자수신 안내를 원하는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고지대상자 또는 공개대상자 (성범죄자) 인적사항	성명:	나이:
	세부 신상정보	
정정 요청 사항		
정정 요청 사유		
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정보[] 공개정보[] 의 정정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청인 (서명 또는 인,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)

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

안내 사항

- 이 고지정보(공개정보) 정정 요청서는 고지 또는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중 실제거주지 등 고지 또는 공개된 정보에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
- 고지정보(공개정보) 정정 요청서는 등기우편, 팩스 외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.

처리절차

요청서 작성	→	접수	→ (7일)	신상정보 관리 (진위, 변경 여부)	→ (지체없이)	대상자 확인 (적합, 부적합)	→ (7일)	신상정보 정정 및 등록	→ (7일)	통보 (14일 이내)
요청인		성평등가족부 장관		법무부장관		경찰서의 장		법무부장관		성평등가족부 장관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/㎡]